



202.13 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4월 28일 화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해당 서비스의 사용이 장애인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커미셔너의 승인을 얻은 경우 특정 서비스의 제공을 인증된 환경으로 제한하는 범위까지 정신 보건법(Mental Hygiene Law) 제16.03조 및 16.05조,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4장 619편.
- 정신 보건법의 제16.33, 16.34, 31.35조 및 제19.20조,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의 제378-a, 424-a 및 495조,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14장 제550, 633.5, 633.24 및 805조,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18장 3항, 제442.18, 447.2, 448.3, 449.4, 450.9, 451.6조,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9장 제166-1.2, 180-1.5, 180-3.4, 182-1.5, 182-1.9, 182-1.11, 182-2.5, 182-2.9 및 6051.1조, 현재 장애인청 또는 장애인청 승인 제공자, 아동가족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면허 또는 인증 프로그램,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인증, 자금 지원 또는 공인 프로그램,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또는 정신보건국 면허, 자금 지원 또는 승인 프로그램의 근로자 중 이전에 배경 검사를 마친 경우 다른 장애인청 승인 제공자 및/또는 아동가족서비스국 면허 또는 인증 프로그램 및/또는 중독 서비스 및 지원 사무소 인증, 자금 지원 또는 승인 프로그램 및/또는 정신보건국 면허, 자금 지원 또는 승인 프로그램에 새로운 신원 조사를 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이러한 조항은 제공자가 이미 자격을 갖춘 개인과 직원 제외 목록(Staff Exclusion List)에 이름이 없는 개인이 갱신된 신원 확인이 완료되는 동안 감독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량을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 보험법(Insurance Law) 제3203조 및 4510조는 COVID-19의 결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생명 보험 계약자 또는 프래너털 조합(fraternal benefit society) 인증 소지자의 보험료 및 수수료 납부 유예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변경되었고, 그러한 조건이 해당 조항에 사용되었습니다.
- 보험법 제3203, 3219, 3220조는 생명 보험 계약자 또는 연금 계약 보유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이러한 조건이 해당 조항에 사용되었기에 그룹 정책 또는 계약 하에 COVID-19

팬데믹의 결과로 권리 또는 혜택을 적시에 행사할 수 없는 그룹 정책 또는 계약 하의 모든 보험 계약자 또는 계약 보유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해당하는 생명 보험 정책 또는 연금 계약 하에 권리 또는 혜택을 행사할 90일을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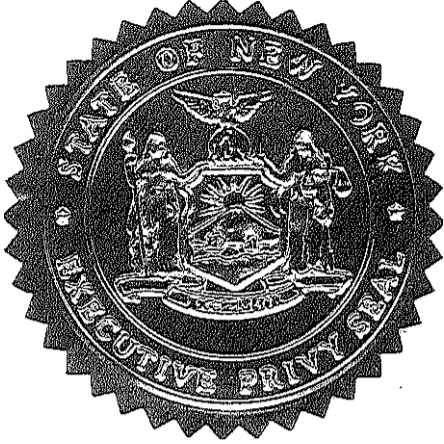
- 보험법 제1116조 및 34, 53, 54 및 55항 및 노동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 제54조 및 제226조는 60일간,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하여, 또는 그룹 보험 증권의 경우 그룹 보험 계약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 대하여 COVID-19 팬데믹의 결과로 재정 난관을 겪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발행된 보험 증권을 취소, 비갱신 또는 조건부로 갱신하는, 또는 그룹 보험 증권의 경우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인증서 보유자를 보장하는 보험사에 모라토리엄을 부과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상기 구제는 보험법 제1113(a)조의 (16), (17), (20), (21), (24), (26), (30) 문단에 규정된 보험의 종류에도 적용됩니다.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 주에 위치하고,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100명 이하의 개인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 은행법(Banking Law) 제576조는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감독관에게 정책 취소와 관련된 행정명령의 조항을 적용할 비상 규정을 고위 금융기관(은행법 XII-B항에 정의된 바에 따름)에 고위 금융기관의 안전 및 건전성 고려사항을 조건으로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 공무원법(Public Officer's Law) 제42조의 부속조항 3 및 4, 결원을 채우는 선거를 위해 주지사가 선포문을 별도로 발급할 것을 요구하는 범위에서.
- 교육법(Education Law) 제414조의 부속조항 (i)은 교육구가 그러한 보육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28일 화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뉴욕 은행법(이하 "은행법")에 따라 감독관에게 서명되어 전달되고, 은행법에 따라 확인 또는 인정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는 문서에 표준 검증 또는 승인 언어를 포함시키고 팩스 또는 전자 수단으로 서명된 문서의 읽기 쉬운 사본을 전송하는 것으로 확인 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퀸즈 자치구 대표 사무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뉴욕시 특별 선거는 2020년 6월 23일로 일정이 조정됩니다. 2020년 3월 24일 특별 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는 후보자만 2020년 6월 23일 특별 선거에 출마합니다.
- 이전에 2020년 4월 28일로 예정되었다가 행정명령 202.12에 의해 2020년 6월 23일로 변경된 특별 선거에는 2020년 4월 28일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었던 개인의 이름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거법(Election Law), 교육법 또는 기타 통합법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31일에 시작하는 모든 사무실에 대한 지정 청원서 또는 독립 지명 청원서의 순환, 제출 및 수집은 이로써 연기됩니다.
- 2020년 4월 또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모든 학교 위원회, 도서관 위원회, 빌리지 선거는 적어도 2020년 6월 1일까지 연기되며, 해당 선거에 대한 시기, 장소 또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시를 따릅니다.
- 뉴욕주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에 의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년 4월 16일까지 발생액 부과 없이 집에서 근무하거나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 행정명령 202.6은 대면 근무 제한에 따르지 않는 필수 서비스였던 건설이 2020년 3월 28일자로 특정 건설만 대면 제한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부터 엠포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어떤 건설 프로젝트가 필수적이며 대면 인력 금지에서 면제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인력 요건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정명령 202.6 및 후속 행정명령에 포함되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COVID-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 공공 또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시설의 장소를 폐쇄하거나 제한한 행정명령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10, 202.11에 따라, 모든 행정명령은 계속되며, 단 그러한

행정명령의 만료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대면 업무 제한은 향후 행정명령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2020년 4월 1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 출산하는 환자에 대한 지원자를 요구하는 행정명령 202.12의 지침은 진통, 출산 및 출산 직후 기간을 돌보기 위해 수정됩니다.



2020년 3월 2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함.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Andrew Cuomo".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be "Mr. C".

주지사 비서